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2007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중화장실 폐쇄 행정예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관악구에서 관리 운영중인 공중화장실을 폐쇄함에 앞서 그 목적과 내용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중화장실 폐쇄
2. 행정예고 목적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의거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우범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률이 거의 없는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중화장실을 폐쇄하고자 함.

3. 공중화장실 폐쇄 대상

연 번	명칭	소재지	비 고
계	7개소		
1	공중화장실 1-16	관악구 삼성동 산 57-1	
2	공중화장실 2-1	관악구 삼성동 808-506	
3	공중화장실 2-2	관악구 삼성동 304-18	
4	공중화장실 2-3	관악구 삼성동 808-505	
5	공중화장실 2-4	관악구 삼성동 산60	
6	공중화장실 2-5	관악구 삼성동 산79-4	
7	공중화장실 2-6	관악구 삼성동 산78	

4.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 기간 : 2022.10.27. ~ 11.16.(21일간)

6. 행정예고 방법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구보 게재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

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제 출 처: 관악구청 녹색환경과(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 제출방법 : 방문(서면), 우편, FAX

- 방문(서면), 우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녹색환경과(4층)

- FAX : 02-879-7830 (전송 후 유선 연락)

○ 기타사항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계획 없음

○ 문의 :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79-6274)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